

社說

회피와 외면의 문화현실

마치 한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느낌이다. 보도매체의 사회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소위 빨간마후라(청소년 포르노) 이후 급속하게 생각되고 있는 우리 문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영화 '제5원소'에 대한 무단삭제 논란, 장선우감독의 '나쁜영화'와 왕가위감독의 '부예노스 아이레스'에 대한 사실상 상영금지 조치 등은 우리 문화의 수준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빨간 마후라 이후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제도권에서의 행동들은 소위 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대명제를 등에 업고 실현적인 작품과 금기시되고 있는 소재들을 다루었다는 이유를 들어 음란이라는 울가미를 남발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검열기준을 교묘히 이용, 미리 삭제하는 등의 상업주의적 면모까지 표출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마치 탄탄한 구성력을 갖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세계의 한국, 세계화 등등을 표방하면서 마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은 선진국의 잣대가 단순한 경제력의 척도만은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비밀비재하게 나타나거나 목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중 언급하기 어려운, 어두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제도권의 대응은 항상 회피로서 일관해왔다. 마치 공문화되어서는 안되는 하나의 치부로서 언급되어져왔다는 말이다.

명확하게 잘못되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맹목적인 회피는 사회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항상 미봉책이라는 차선을 택하도록 유도해 왔기에 악순환의 연속은 계속되어져 왔다. 옳지 못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선 그들에 대한 직시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처만이 오류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회피와 외면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단어는 현실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총련, 와해보단 수정하자

한총련이 존재의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은 한총련 중앙조직에 잔류중인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구속할 방침으로 있어 한총련 와해방향이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지난 5월 한총련 출범식에서 벗어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지도부의 혁신과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학생운동이 지니고 있던 최대 무기인 도덕성이 실추된 마당에 더이상 지난 날의 모습을 고집할 때가 아님을 분명히 한 바도 있다. 이는 한총련을 바라보는 선배들의 우려와 대다수 국민들의 실망에서도 변화의 필연성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총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총련은 검찰의 표현과 같이 친북이적단체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다. 한총련은 4.19와 6.10을 주도해나면서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학생운동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해야 더욱더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백만을 헤아리는 모든 대학생이 이적단체 구성원이 아니라면 한총련 내부의 개혁 속에서 학생운동의 변화를 기대해 보아야 한다. 실추된 도덕성은 빠른 자성속에서 다시 세우고 경직된 학생운동의 조직체계는 보다 유연하고 시대에 맞게 재편되어야 한다.

결국 학생운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성적인 비판과 논쟁의 과정자체를 부정한다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의 학생운동의 가능성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과는 화해와 고집하기보다는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이 스스로의 경직성 속에서 벗어나와 건강한 대안세력으로 다시 서는 것을 지켜볼 때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고집한다면 치열하고도 건강한 논쟁속에서 변화를 기대해 보는 것, 혹은 관료주의적인 조직체계가 비판의 대상이라면 보다 민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학생운동과 한총련의 변화를 기대해 보는 것이 현재의 할 일이다.

시론

동성동본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이젠 땀땀하게 살 수 있어요

4촌이상 혼인시 우생학적 문제없어

동성동본과 근친혼은 전혀 다른 개념

강정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그동안 위헌의 소지도 논란이 많았던 동성동본간의 금혼에(민법 제 809조 1항)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개정 때까지 그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개정되지 아니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1999.1.1일자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부합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서 그동안 혼인신고를 못하고 읍지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동성동본 부부나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이제 자유롭게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지난 수십년간 그 존속과 폐지를 놓고 유럽측과 여성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동성동본 결혼을 반대해 온 유럽측은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우리나라 전통과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륜도덕에 반하고 우생학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에서 그 타당성이 없다.

첫째,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도 미풍양속도 아닌 중국의 중벌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에 들어와 도입된 이 제도는 사대주의적 봉건적 잔재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이미 중국에서는 80년전에 폐지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이 동성동본 불혼제도를 계속 유지해 온 것이다.

▲동성동본 금혼 등 오랜현안들이 사실상의 위헌으로 결정된 헌법재판소

이다. 둘째,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유전학자에 의하면 4촌이내의 결혼에는 사산 등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근친혼의 범위를 벗어난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우생학적, 유전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동성동본이라도 16촌이상이면 일반인의 결혼에서보다 열성유전 인자의 발병률이 더 낮다고 유전학자들은 밝히고 있다.

한편 우생학적으로 유전적인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남성혈통과 여성혈통 모두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오로지 남성혈통만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과학성에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동성동본의 혼인이 인륜과 도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그 타당성이 없다. 즉 혼수를 헤아릴 수 없는 남자가 단지 수천 수백년전 조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 없고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남녀간 사랑의 감정을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인륜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할 설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이고 감정이자. 따라



<사진 : 동아일보>

서 동성동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윤리적 또는 도덕관념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동성동본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굳이 법으로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동성동본 금혼이야말로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면 근친혼이 성행할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 동성동본혼인은 근친혼과는 전혀 다른 것이

다. 동성동본은 단지 성과 본이 같다는 의미, 즉 시조를 같이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근친은 말 그대로 가까운 친인척을 일컫는 것으로서 부·모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민법 제 815조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에 무효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한다고 하여 근친혼끼리의 결혼이 성행할 것이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행복추구권, 남녀간의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약 20여만쌍의 동성동본 부부는 민법의 동성동본 불혼규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으며 수많은 예비 부부와 젊은이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며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성동본 부부는 단지 먼 옛날의 조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고 몇몇만 부부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태어난 아이도 혼인외의 자(사생아)로 출생신고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세금공제 의료보험, 가족수당 등 사회적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고, 상속 등 재산문제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했었다.

그러나 늦게나마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금혼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동성동본 부부들에게 그들의 당연한 지위와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가족법이 남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부부평등, 남녀평등의 민주주의를 확립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PC 통신원

청소년 보호법 vs 청소년 처벌법

성인까지 처벌대상, 예외가 없다

'빨간 마후라'는 더이상 하늘의 사나이가 아니다. 이젠 아무도 '빨간 마후라'에서 예전의 노랫가락을 연상하지는 않는다. 단지 몇몇 10대들이 모여서 극본, 연출, 각색까지 한, 오늘날 청소년 탈선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포르노만을 연상할 뿐이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 탈선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다가 적발된 사례와 폭력조직결성 등의 기사가 연일 TV나 각 일간지를 장식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선 청소년 탈선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지난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약물, 매체 등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 규제 또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무엇인지, 탈선의 기준은 어디에 봐야 하는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부분 중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음란, 폭력만화 규정의 폭을 너

무 넓게 잡아서 성인만화까지 법의 잣대로 심판하려 하고 밀폐공간이라든가 노래방을 유해환경으로 판단하는 모습은 빈대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처사가 아닐까 한다.

PC통신 하이텔에선 이번 청소년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교육정상화, 청소년 놀이문화 육성 등)을 모색하지 않은 채 제재만 강화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ID: Jupiter5, sr5492pj, cndrip 등) 이젠 청소년이 즐길수 있는 놀이문화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ID: KIMAN, crazy38 등) 기성세대의 모습을 비판하며 '성인보호법'은 왜 안 만드는 의견도 제시되었다.(ID: pascal01, surplace 등)

청소년 탈선은 분명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번 청소년보호법은 분명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최용식 기자>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도서관에 갈 때마다
마음줄이게 하는 수위아저씨
대외 연구비를 제일 많이
가져 오신다는 장진교수님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는 조경원 총장님
모두 다 낯익은 얼굴들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위 친구들을 추천하세요.
대학주보 인물 Focus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립니다.

• 대학주보는 인물 Focus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주위 친구나 교수님, 직원들 알려주세요 하고 믿는 분들
추천해 주세요.
• 연락처 : 961-0095/0331)280-2055 대학주보 편집실